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58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전종덕 · 이수진 · 정혜경
손 솔 · 용혜인 · 김준형
송옥주 · 윤종오 · 윤준병
김종민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

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제7조제2항 후단 중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를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제4호에”를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로 한다.

5. 제2조제4호카목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 차. (생략) <u><신설></u> <u>카. (생략)</u>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가. ~ 차. (현행과 같음) <u>카.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u> <u>타. (현행 카목과 같음)</u>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 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 어야 하고, <u>특정 성(性)으로만</u> <u>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u>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⑤·⑥ (생 략) ⑦ <u>제4항제4호에</u>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 ⑭ (생 략)	-----. ----- ----- -----, <u>특정 성(性)이 전체</u> <u>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u> <u>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조제4호카목에 따른 인공</u> <u>지능의 도입 및 활용으로 영</u> <u>향을 받는 근로자 등을 대표</u> <u>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u> <u>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u> <u>는 사람</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제4항제4호 및 제5호에</u> --- ----- -----. ⑧ ~ ⑭ (현행과 같음)
--	---